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85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김용태·박준태·이종배

우재준 · 김위상 · 강승규

한기호 • 박충권 • 이성권

서천호 · 김성원 · 조은희

박정하 · 강선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,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%에서 2%로 인하했음.

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%에서 5%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2항 중 후단 "9"를 "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연체금) ① (생 략)	제30조(연체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	②
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	
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	
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	
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	
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	
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	
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	
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(가산	,
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은 미납	
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<u>9</u> 를 초	<u>5</u>
과하지 못한다.	